

공공묘지의 공원화 방안

우리 나라의 묘지문제는 앞으로 사회적인 큰 이슈로 부각되어질 것이다. 특히, 기존의 묘지는 집단화, 공원화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민인식과 관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주민의 편익과 접근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점차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새로운 묘지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묘지시설을 재정비, 재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공공묘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원화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공묘지를 유형별 분류기준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공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高德基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1. 머리말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새로운 의식 전환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여 '21C 장묘문화의 비전'을 제시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정부와 국민은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보건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등에 많은 시설투자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흔히 죽은 자의 공간인 묘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협오시설로까지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은 유교적 관습에 의해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로 인해 1998년말 현재 매년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 가량의 면적이 묘지로 전환되어 전국의 국토가 묘지로 바뀌어 가고 있어 묘지난에 대한 고민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생활공간의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묘지문제는 앞으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질 것이다. 특히, 기존의 묘지는 집단화, 공원화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국토개발 저해, 자연환경 훼손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구역내에 묘지 및 시설관련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식전환과 새로운 장묘문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묘지시설을 현대화하고 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공간으로서 환경친화적 시설로 새롭게 조성하여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운영 측면에서 개인묘지보다는 집단묘지(공·시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집단묘지의 접근성 및 시설의 낙후성,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각 공공묘지시설은 대부분 시설이 낙후하고, 관리상태도 부실한 채 방치되어 있어 지역주민 및 이용자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공공묘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원화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공묘지를

표 1. 묘지 유형별 분류

구 분	종 류	묘지유형	용어 정의
공공	공 동	공 동 묘 지	- 1912년 제정된 법에 의거 지방공공단체에서 설치한 묘지로 읍·면·동에서 관리
	공 원	공 설 묘 지	- 1962년 이후 지방공공단체에서 설치한 묘지 - 공공묘지 중 공원화하여 공설묘지로 이용하는 묘지
	특 수	특 수 묘 지	- 능묘, 국군묘지, 국립묘지
사설	재단법인	사설공원묘지	- 묘지설치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규모 10만㎡ 이상의 집단묘지
	기 타	단 체 묘 지	-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규모 10만㎡ 미만의 묘지
		종(문)중묘지 가족 묘지 개인 묘지	- 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묘지를 일컬으나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토지를 이용하여 설치된 묘지가 대부분을 차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유형별 분류기준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공
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묘지시설 현황

1) 묘지 유형별 분류

묘지는 관리주체에 따라 크게 공공묘지와 사설묘지로 구분된다. 공공묘지는 공공공동묘지, 공공공원묘지, 특수묘지로 나눌 수 있으며, 사설묘지는 사설(법인)공원묘지, 단체(종교)묘지, 종중(문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로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특히 공공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공동묘지는 마을 단위인 읍·면·동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다.

2) 묘지설치 현황

1998년말 현재 전 국토에 산재되어 있는 전국의 묘지면적은 약 996km²로 전 국토의 1%를 차지하며 분묘수는 1998만기로 추정된다. 또한 매년 묘지면적과 분묘수는 약 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따라서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분묘수가 약 3300만기로 늘어나 묘지면적이 1,400km²에 이르러 국토면적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선진국의 묘지시설 현황

1) 미국

미국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매장위주의 관행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묘지면적의 한계로 현재는 화장을 권장하는 추세이다. 매장시설의 경우 평장으로 1평 정도이며 지하 2~3층 규모의 묘지공간을 고밀도로 이용하고 있다. 과거의 묘역은 비석이 즐비하게 서 있었으나 20여 년 이내의 것은 동판의 판석이 도열하여 있어 잔디 등 묘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장화장시설의 종류가 다양해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선호에 따라 선택의 범위가 넓다.

미국은 국립묘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영 및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묘지형태, 화장시설,

표 2. 유형별 묘지설치 현황(추정치)

구 분		개소	면적(km ²)	총매장가능 분묘수(만기)	기매장분묘수(만기)
집단 묘지	공설묘지	134	21.8	74.4	45.4
	사설묘지	116	34.0	126.6	62.9
	공동묘지	-	90.5	-	400.0
개인묘지		-	849.7	-	1,489.7
전 체		-	996.0	-	1,998.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배출기준, 방부처리 등에 대한 규제사항만을 관장하고 있다. 미국의 도시내 일반묘지는 도시인구의 증가로 시역이 확대되면 기존 묘지를 이전토록 하고 있으나 문화적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기념묘지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묘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영구묘지가 된다. 대부분 공원묘지에는 장의소, 묘지, 화장장, 화원 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모든 장례의식을 한 번에 거행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묘지가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 죽은 자에 대한 공경심이 우리 나라에 비해 오히려 강한 것으로 나타나 평일에도 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약 35,000개의 자치구들이 최소 1개의 자치구 묘지를 소유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자치구 묘지에 매장된다. 만약 한 자치구가 매장할 장소가 부족하여 묘지의 신설 또는 확장이 필요하나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타 자치구의 묘지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묘지 설치에 따른 재정 및 묘지부지로 인한 문제가 있는 자치구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범자치구 묘지의 부지구입, 설치,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자치구는 임의대로 묘지의 정비를 행할 수 있으며, 현대 도시계획의 원칙에 의해 죽은 자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 자의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을 조성하고 대단위 식목림, 저수지, 잔디밭, 휴식공간 등을 배치

할 수 있다. 묘지정비에 대해 자치구에 부과된 의무로서는 분묘마다의 경계에 통로를 만들어야 하고, 도로설치, 묘지담장 설치, 시한부 분양분묘 구역마다 식목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독일

독일의 공공묘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물로서 지역주민의 시신이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곳에 매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화장후 유골을 매장할 수 있다. 공공묘지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치단체구역내의 공공묘지 중에서 특정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치단체에 등록된 등기를 제시함으로써 권리가 주어진다. 자치단체는 장소와 기간을 규정하게 되며, 자치단체가 장례와 묘지의 정비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장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임자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다.

독일 공공묘지에 관한 규정에서 허락하는 묘지의 종류는 병렬적 묘지, 병렬적 납골묘지, 선택적 묘지, 선택적 납골묘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묘지의 유형은 공공묘지마다 지역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며, 병렬적 묘지와 선택적 묘지의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병렬적 묘지는 우리 나라 공원묘지처럼 병렬, 종렬이 규격에 따라 정렬되어진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10세 미만과 그 이상 연

령의 망자묘역, 그리고 납골묘역으로 나누어진다. 선택적 묘지(Wahlgräber)는 우리나라 개인묘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묘지의 위치와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지역의 묘지에 관하여 양도하거나 묘지의 주변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공묘지내의 묘지는 엄격한 규정하에 설치되며 주위의 묘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4. 공공묘지의 문제점 진단

1) 경계구역의 불명확

대부분의 공공묘지는 정확한 경계구역표시가 안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공공묘지와 민간 사유지의 경계구분이 없는 상태로 사유지가 공공묘지를 침범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할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공공묘지 현황과 역사를 잘 아는 마을의 이장(里長)도 정확한 경계구역을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공공공설묘지의 경우는 어느 정도 구역표시가 되어 있으나 공공공동묘지의 경우 거의 경계표시가 안되어 있어 공공묘지의 총면적, 총매장기수, 무연분묘기수 등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경계표시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관리운영체계의 미비

공공묘지의 관리주체인 시·도 및 읍·면·동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관리인이 없어 불법매장 및 가

묘를 쓰는 경우가 있다. 전국적으로 공공묘지의 기매장분묘수 중 연고자가 없는 무연비율이 약 30~40%로 추정하고 있어 묘지의 묘적부와 묘적도의 작성·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누가 언제 어느 공공묘지에 매장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전혀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관할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나 예산, 인력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안되고 있다.

3) 시설의 낙후성 및 주민들의 낮은 선호도

공공공원묘지로서의 시설을 잘 갖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공묘지는 묘지조성 상태, 묘지내 조경, 부대시설의 설치 및 진입로 상태 등에 있어서 공공묘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의 공공묘지를 재정비하여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나 재원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층의 묘지비용 부담 및 기존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공공묘지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또한 기존 공공묘지 시설의 급격한 경사도, 진입로 및 도심에서의 접근성 불량,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의 부재 등 묘지 시설에 대한 재정비 및 현대화가 안된 상태로 공공묘지 이용을 선호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5. 공공요지의 공원과 방안

1) 공공요지의 단계적 유형별 분류

현재의 공공요지 지역을 도시계획상 묘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용도에 따라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공요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요지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요지의 유형별 분류방법은 공공요지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원과 개발지역, 부분

공원과 개발지역, 사용보존지역, 자연보존(폐기)지역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 참조).

2) 무연분묘의 정비 및 화장·납골시설 확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존의 공공요지를 공원으로 하는 데에는 법적 문제와 재원, 인력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공공요지의 약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무연분묘의 정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장묘법상에도 무연분묘

표 3. 공공요지의 유형별 분류 및 세부 정비방안

구분	공원과 개발지역	부분 공원과 개발지역	사용보존지역	자연보존(폐기)지역
분류 기준	개발제한구역내 있지 않아 재정비 및 확장을 통해 공공요지의 공원과 종합화시설을 마련하기 적합한 지역을 의미하고, 지역내에서 우선적으로 공원으로 되어야 할 공공요지를 의미함.	묘지시설 재정비를 통해 공공요지 공원으로 적합한 지역이지만 공공요지 전체를 공원으로 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는 지역을 말함.	묘지시설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공공요지로는 적합하나, 공원으로 재개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임. 현 상태에서 묘지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되 추가 개발하여 매장을 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지역을 의미함.	만장되어 공공요지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공공요지로서의 재개발 조건 및 주변 여건상 묘지로서 적합하지 못한 지역으로 향후 매장금지 조치와 함께 자연보존 또는 타용도로 전환되어야 하는 지역을 말함.
세부 정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1~2개 공공요지의 개발이 유리한 조건(위치, 면적, 토지용도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조성함. - 매장,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장묘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조경 및 건축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환경친화적이고 현대감각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무연분묘 정리 및 구역경계 표시를 실시함. - 묘지의 주변환경 개선으로 진입로 정비, 안내판 및 편의시설(화장실, 쉼터)을 설치하도록 함. -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총면적, 매장기수, 가능매장기수 등의 현황파악을 실시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총면적, 매장기수, 가능매장기수, 무연분묘 정리 등의 현황파악을 실시하도록 함. -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 구역경계 표시 등 묘지를 재정비하도록 함. - 향후 묘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으로 또는 자연보존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용을 금지토록 함. - 연고자를 파악하여 공원으로 지역으로 이장을 유도함. - 무연분묘를 파악하여 법질처에 따라 화장, 납골당에 안치 또는 공원에 집산화하도록 함. - 타용도로 전환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의 유골은 공·사설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된 장묘법에는 시한부 매장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화장하여 이를 납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 단위로 분묘소재지, 면적 등을 기록한 묘적부를 정비하고, 단계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화장 및 납골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화장시설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로 교체, 내부시설 정비 등의 현대화 사업과 주변환경조성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납골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다양화된 시설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3) 재원조달 및 민간위탁 조성방안

기존의 공공묘지를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적·지형적인 특성(묘지위치, 조성규모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서는 재원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보조와 시·도 재정에서 투자재원을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재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게 위탁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민간위탁으로 기존의 공공묘지를 공원묘지로 조성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할 수 있는 어려운 사항(재원, 인력 등)

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민간위탁 조성의 경우는 추후 매장 및 납골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다른 공설묘지보다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공원화 사업을 시행한 후 일정 부분의 면적은 해당 시·군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4) 시·도립 공원묘지 조성 및 장묘시설의 종합화 방안

우리 나라에는 국가유공자 및 순국 선열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뜻으로 국립묘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단위에서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도 기존의 공공묘지를 개발하여 1~2개의 시·도립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향토성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묘지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립 공원묘지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에 개인묘지를 사용하던 주민도 이곳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원묘지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문화적 가치 및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공원묘지의 경우 묘지시설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장례식장, 화장장, 편익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일괄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대규모 공원묘지를 조성할

경우 화장 및 납골시설, 장례식장 등을 함께 설치하면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및 편의성의 장점으로 장례방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 결론

우리는 장묘문화의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인한 매장문화’의 잠재적 인식의 틀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매장관습을 당장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민인식과 관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주민의 편익과 접근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점진적인 홍보 활동 및 여건조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묘지수급차원에서 새로운 묘지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묘지시설을 재정비, 재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아직까지 화장장이나 묘지시설의 설치에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주민의 동의 없이는 설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토지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재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공묘지를 재정비하여 공원묘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묘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묘지현황을 파악하여 공원묘지로 개발할

가능성이 유리한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규모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단위의 공공묘지 정비실무팀을 운영하고, 시·군 단위의 공공묘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단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세부적으로는 무연분묘의 정비작업을 통하여 개장 및 이장을 하도록 하여 개발에 필요한 선결조건을 해결하도록 한다.

둘째, 공원묘지로 조성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방법은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고보조와 도 재정에서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와 도 보조금을 확대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투자재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게 위탁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일정부분 면적은 해당 시·군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원묘지 조성시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매장과 화장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국민 및 지역사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공묘지를 재정비하여 공원묘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지, 죽은 자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과의 친밀성 있는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묘지수급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원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문